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및
관련 벌칙 신설〉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96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7.
3. 회부연월일 :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및 관련 벌칙 신설

개정안은 화재 시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55조 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② (생략)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u>기능과 성능</u>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u>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③ ----- ----- ----- --- <u>기능·성능·식별</u> ----- ----- <u>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차단 및 가림 시설의 <u>설치</u>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u>폐쇄·차단</u>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폐쇄·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u> -----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u>폐쇄·차단</u>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6조(벌칙) ① ----- ----- <u>폐쇄·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u> -----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²⁾과 성능³⁾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⁴⁾(잠금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기능’이란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목적 달성을 위한 작용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①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의 동작과 배관을 통한 송수하고 헤드를 통해 물을 방출함으로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므로 중간 밸브를 잠글 경우 방수가 차단되기에 중간 밸브를 잠그는 행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고,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와 수신기의 신호처리, 경종(비상벨)을 통한 화재알림 등의 역할을 하는 설비로서 전선 및 전원을 차단할 경우 기능이 마비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선·전원 차단행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임.

3)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구성요소(용품) 별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특성이나 능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은 하지만 각 구성요소(용품)에서 규정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의 예시로 음향장치의 음량을 줄이는 행위 및 실내장식물의 잘못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살수반경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들고 있음.

4) 폐쇄의 사전적 의미는 ①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버리는 것, ②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함.

포함함. 아하 같음)·차단⁵⁾ 등⁶⁾의 행위를 금지하며(제12조제3항),

누구든지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55조),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6조).

또한,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제12조 제1항 전단),

해당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제2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5) 차단의 사전적 의미는 ①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②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는 것을 의미함.

6)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에 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및 고착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제61조제1항제1호)7),

개별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음(제2조제1항제6호가목)8).

개정안은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위반 시의 벌칙을 현행법에 따른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55조제1항 제2호, 제56조제1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8)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각주 1) 참조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가림시설 설치 등 소방시설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완강기나,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 등은 신속한 위치 확인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의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시설은 화재 진압과 피난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가림시설의 설치 등 소방시설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서로 유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행 법령에도 소방시설의 식별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완강기 등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거나 유도등처럼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각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61조제1항제1호).

<개별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 식별 관련 규정(예시)>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함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소화전”이라는 표시 및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함(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제3항 및 제5항)

(완강기)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함(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4항)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별로 피난구의 위치 또는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및 설치 높이 등에 대하여 정함(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 및 제9조)

(자료: 소방청)

둘째, 가림시설 설치 등 소방시설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제재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화재발생 시 해당 행위의 원상회복 용이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소화배관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경우 또는 소화펌프의 동력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와 같이 소방시설을 폐쇄·잠금·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진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해당 대상물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상 신속한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방시설 기능·성능 저해 행위를 금지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로 보임.

또한, 해당 조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접수 시 소방본부장 등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체계를 두고 있음.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소방시설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것은 화재 진압활동을 지체시키고, 혼란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중요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의 폐쇄·잠금·차단 행위와 유사점이 있으며, 폐쇄·차단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능·성능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주는 행위와는 구별됨.

따라서, 소방시설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폐쇄·잠금·차단 행위와 동일 수준에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현행 법률에서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폐쇄·차단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다양한 개별 행위를 일일이 법문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방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가림막 설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가림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쇄·차단에 준하는 위반행위로 보는 것 역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